

대구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22가합2008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창오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9. 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4,400,221원 및 이 중 1,523,112,873원에 대하여 2022. 1. 11.부터 2022. 3. 12.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0. 8. 3.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4.

접수 제1675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 유통을 원활히 하는 등의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전기전자제품 판매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될 채무를 별지 신용보증약정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별지 신용보증약정을 순번에 따라 '순번 1 신용보증약정' 등으로 칭하고,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증료 등 납부)

③ 본인이 주채무 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합니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단서 생략)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2.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13. 위 각 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 또는 원고에 대한 상환채무와 관련한 담보 유무에 불구하고 원고가 보증채무이행 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증채무 이행 및 통지)

①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고는 법령 및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제16조(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제10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에 따라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피고 회사는 기업은행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830,000,000원(= 순번 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000,000,000원 + 순번
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560,000,000원 + 순번 3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증여 및 무자력

1) 피고 B, C은 2014. 4. 18.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21. 8. 24.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소유였던 위 1/2 지분, 즉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8. 3.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21. 11. 9.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22. 1. 11.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게 원리금 합계
1,524,157,3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순번 3
신용보증약정의 미 이행금액 216,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2021. 10.

16.부터 위 대위변제 전날인 2022. 1. 10.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1,287,120원(= 216,000,000원 × 87/365 × 2.5%. 10원 미만은 절삭)이다.

3)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1,044,481원을 회수하였는데, 위 돈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 손해금은 228원이고, 위 대위변제일 당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정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8%이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에 대하여: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1,524,157,354원에서 기회수한 1,044,481원을 제외한 나머지 1,523,112,873원(= 1,524,157,354원 - 1,044,481원), 위약금 1,287,120원, 확정 손해금 228원 합계 1,524,400,221원(= 1,523,112,873원 + 1,287,120원 + 2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은 등기부상의 원인일자인 2020. 8. 3.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21. 8. 24. 무렵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C의 주장

1)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시로 사업자금을 대여해주어, 2017.경부터 2020. 7. 28.까지 피고 B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이 합계 833,610,000원, 2020. 1. 7.부터 2020. 7. 23.까지 피고 B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이 합계 118,450,000원이다. 피고 B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가 얼마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대물변제로 받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피고 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회사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답변서를 비롯한 기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B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1,524,400,221원(= 대위변제금 1,523,112,873원 + 위약금 1,287,120원 + 확정 손해금 2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4,400,221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위변제금 1,523,112,87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2.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2. 3. 1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

1)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 시점

가)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등기부상에 등기원인일자의 기재가 있더라도 위 원인일자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이와 다른 시기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자가 아닌 실제로 그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8654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자인 2020. 8. 3.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21. 8. 24.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①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자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약 1년 뒤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인데,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1년 가량이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을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 B이 대표자로 있던 피고 회사는 2021. 11. 19.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킨바, 피고 회사 및 피고 B의 자금 사정은 2021. 상반기부터 이미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B은 2021. 4. 21. H 앞으로 이 사건 지분 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나머지 부동산들, 대구 동구 I, J, K, L, M, N 토지에 관하여 2021.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 B은 2021. 상반기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이 사건 지분은 피고 B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 되었다.

④ 피고 B이 이미 1년 전에 체결된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자금 사정이 악화된 2021. 8. 24.에서야 갑자기 이를 이행하였다기보다는, 자금 사정의

악화로 2021. 상반기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을 처분해 오다가, 결국 2021. 8. 24.경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지분을 처인 피고 C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1. 19.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 직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O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 P카드, Q카드, R카드에 대한 현금서비스 채무, S은행에 대한 카드론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지분의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사해행위의 성립 및 피고 C의 악의 추정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B은 그 소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자신의 처인 피고 C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지분을 받은 것이며,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 C과 피고 B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 또는 대물변제에 관한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피고 B 및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 악화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실제로는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 C이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B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성호, 판사 강수희, 판사 유진홍

신용보증약정

순번	보증번호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출금액(원)	보증금액(원)
1	T	2016. 6. 9.	2017. 6. 8. (2021. 12. 3.로 연장됨)	1,000,000,000	800,000,000
2	U	2016. 11. 16.	2017. 11. 15. (2021. 11. 12.로 연장됨)	560,000,000	476,000,000
3	V	2020. 4. 16.	2021. 4. 15. (2021. 10. 15.로 변경됨)	270,000,000	216,000,000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W에 있는 X아파트 Y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13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W 대52576.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2층 E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20.00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52576.8분의 76.45

단, 갑구란 21번¹⁾ C 지분 2분의 1. 끝.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C 지분 2분의 1'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갑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2021. 8. 24.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갑구란 21번의 2분의 1 지분으로 보이므로(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2014. 4. 18.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